

[별표 7] <신설 2010.6.15>

주류의 표시사항별 표시기준(제57조의2제2항 관련)

표시사항	표시기준
주류의 종류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표시
원료의 명칭 및 함량	1. 국산주류 가. 원료(물과 첨가재료를 제외한 주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재료를 말하며, 주정과 원료용 주류를 포함한다)의 명칭 표시대상 1)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그 원료 2) 1)에 해당하는 원료를 포함하여 그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3가지 이상의 원료 3) 주정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 나. 원료의 함량 표시대상 가목의 표시대상 중 1)에 해당하는 원료 2. 수입주류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 준용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1. 2010년 8월 4일까지 가. 국산주류 1) 표시대상 가)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 나)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특정 원료가 주된 원료가 아니더라도 그 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 포함 2) 생산국가의 판정 「대외무역법」 제34조 준용 3) 표시방법 가) 국산 원료: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명칭을 표시 나) 수입 원료: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표시 가능 (1) 원산지가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1)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인 경우: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명칭을 표시하고 혼합비율은 생략 가능 (2)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생략한다. (가)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나)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용기 또는 상표의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3) (1) 및 (2)에 따라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한 경우로서 그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폭이 15% 이하이면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 표시 가능 나. 수입주류 「대외무역법」 제33조 준용 2. 2010년 8월 5일 이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준용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1. 제조일자 표시방법

	가. 연·월·(일)의 순서로 표시 나. 제조번호(lot number)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략 가능 다.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인 탁주, 약주 및 맥주는 제조일자 생략 가능 2. 면세여부 표시대상 및 방법 가. 표시대상: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나. 표시방법: 면세주류의 병마개와 상표를 면세되지 않는 주류와 구분하여 사용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 표시대상 탁주(살균탁주는 제외한다), 약주(살균약주는 제외한다) 및 맥주 2.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설정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고시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 준용 3. 표시방법 "00년 00월 00일까지"로 표시하거나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개월, 년)"로 표시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1. 국산주류: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제조장의 소재지 대신 본사의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제조장기호도 함께 표시 2. 수입주류: 수입업자의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자명을 표시
첨가재료의 명칭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재료